

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710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9. 24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1. 9. 25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01. 10. 24

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-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2001년 7월부터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, 종합토지세 경감내용 신설(안 제9조제2항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현행 고성군세감면조례상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1년 3월 28일자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2001. 10.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